

「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안이유

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3956호, 2016.2.3. 제정, 2016.8.4. 시행)됨에 따라, 동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
마.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통지에 관한 사항 및 제안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의견 제출

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
- 문의전화 : 044-203-2749
- 전자우편 : hyunna@korea.kr
- 팩스 : 044-203-3475